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688
----------	-----

발의년월일 : 2009. 5. 6.

발 의 자 : 박홍규의원의외 3명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자문·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3. 근거법규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 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 사회에 더 붙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생활 교육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외국인 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88)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5. 6(수)

나. 제출자 : 박홍규 의원외 3명

다. 위원회 회부 : 2009. 5. 11(월)

라. 위원회 상정 : 2009. 5. 15(금)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홍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주요골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자문·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4. 근거법규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 국적법 제2조 및 제4조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성낙팔)

가.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한국어 교육 등 각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나.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2008. 3. 21일 제정된 이래, 전국자치단체 중 1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울주군도 2009. 4. 9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다. 우리 중구에서도 결혼이민자 550여명과 이들의 가족구성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한국어 교실, 정보화 교육 등의 시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약 1,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도 추가 지원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들의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